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 및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1천339만 미합중국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 등에 5천968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38억4천900만원,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119억원 등 총 1천760억8천258만4천618원 및 1만517만불을 출연 및 출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사항 외에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3. 10. ~ 3.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37호 및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204만 미합중국달러
38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출연	1천135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2에 제99호부터 10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출연	204만 미합중국달러
10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천227만 미합중국달러
10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217만 미합중국달러
10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2천945만 미합중국달러
10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10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출연	375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4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7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5에 제33호 및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1천522만 미합중국달러
3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238억4천900만원

별표 6에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1천312억8천744만6천440원
20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 기금에 출자	90억4천613만8천178원

별표 7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46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10에 제38호부터 제4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224만 미합중국달러
3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출연	94만 미합중국달러
4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23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12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16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80만 미합중국 달러
---	---	-------------

별표 17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119억원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연 락 처	(044) 215 - 8725